

# 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91,764,575	23,752,937
일반회계	780,381,490	23,411,445
특별회계	11,383,085	341,493
기타특별회계	11,383,085	341,493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295,605	38,868
주차장 특별회계	9,495,983	284,879
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	65,191	1,956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437,381	13,121
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88,925	2,668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 5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497,03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